



자산 이전



자산 양도 프로그램은 자산 또는 비즈니스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환경 상태를 공개하도록 요구한다. 추가 조사 및/또는 정화가 필요한 경우, 판매자와 구매자는 매매 전에 그 책임에 대해 협상할 수 있다. 매매 시 관련 당사자들은 자산 상태를 CT-DEP 에 보고하는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. 이는 CT-DEP 가 소유물과 관련하여 확인된 환경적 영향이 올바르게 해결되도록 보장하는 기회를 제공한다.

법적 요구사항

- ◆ 자산양도법[CGS 22a-134 에서 22a-134e 까지, 22a-134h]은 자산 또는 비즈니스 (이하 “사업장”이라 칭함) 명의 변경 시 환경 상태를 공개하도록 요구한다.

의류 관리 업계의 경우, 사업장에는 다음이 포함된다.

- 현재 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1967년 5월 1일 이후 세탁업을 했던 부동산, 또는
- 1980년 11월 1일 이후 영업을 한 후로 한 달에 100kg 이하의 유해 폐기물을 방출한 부동산. 이에는 오염된 토양, 지하수, 또는 침전물의 정화로 인해 생성된 유해 폐기물은 포함되지 않는다.



- ◆ 사업장 양도 후 10일 이내에 네 개의 자산 양도 양식 중 하나를 수수료와 함께 CT-DEP 에 제출해야 한다.

(주의: 1987년 10월 1일 이후 사업장을 매매한 경우, 과거 양도 당사자들 또한 매매 당시 양식을 CT-DEP 에 제출해야 했다.)

어떠한 양식을 제출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, 양도 당사자들은 매매물 전체의 환경 상태를 평가해야 한다. 양식에 관한 설명은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.

- **양식 I**은 유해 폐기물이나 유해 물질의 방출이 없었을 때 사용한다.
또한 이 양식은 유해 물질 (유해 폐기물이 아닌)의 방출이 있었으나 정화기준 [RCSA 22a-133k]에 따라 클린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. 그 사업장의 환경 상태를 요약하는 환경 상태 평가 양식(ECS Form)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.
- **양식 II**는 유해 폐기물이나 유해 물질의 방출이 있었으나 정화 기준 [RCSA 22a-133k]에 따라 클린한 경우 사용한다.
양식 II 제출을 입증하는 CT-DEP 또는 자격증이 있는 환경 전문가가 작성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. 자격증이 있는 환경 전문가들(LEP)이란 CT-DEP를 대신하여 클린을 증명할 수 있는 권한을 CT-DEP로부터 인가 받은 전문가들을 일컫는다.
- **양식 III**은 사업장에서 유해 폐기물 또는 유해 물질 방출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클린하지 않았거나 사업장의 환경 상태가 알려지지 않은 경우 사용한다.
환경 상태 평가 양식을 양식 III 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.
- **양식 IV**는 유해 폐기물 또는 유해 물질 방출이 사업장에서 발생하여 정화 기준 [RCSA 22a-133k] 에 따라 이를 클린하고 모니터링만이 남아 있는 경우 사용한다.
환경 상태 평가 양식을 양식 IV 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. 양식 IV 제출을 입증하는 CT-DEP 또는 자격증이 있는 환경 전문가가 작성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.

자세한 정보 또는 자산 양도 양식을 위해, (860) 424-3705 의 CT-DEP 자산 양도 프로그램에 연락하거나 www.dep.state.ct.us/pao/download.htm 으로부터 자산 양도 양식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.



알고 계십니까?

자산양도법을 위반하면 벌금이 하루에 최고 \$25,000입니다.

2004 의류 관리 팩트 시트

Connecticut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rotection, 79 Elm Street, Hartford, CT 06106-5127
오염 방지 사무실 (860) 424-3297 www.dep.state.ct.us/wst/p2/garcare/gcindex.htm